

보육실습 이수 기준

보육실습은 하단의 각 항목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.

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실습 세부기준

	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1항 관련 [별표4]	2010 보육사업안내 세부기준	유의사항
교과목	보육실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‘보육실습’교과목 이수를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: 보육현장실습, 교육실습 	예) ‘사회복지현장실습’ 교과목으로 보육실습 이수한 경우 ⇒ 불인정
이수 학점	1과목 (2학점)	2학점 이상, 평가점수 80점 (B학점) 이상인 경우 실습 이수 인정	성적증명서를 통해 보육실습 교과목 평가점수(80점, B학점 이상) 및 2학점 이상 이수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
실습 기관	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	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(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육정원 15인 미만인 보육 시설에서의 실습 인정 불가 국·공립 외의 보육시설은 인가증 상에 보육정원이 기재되어야 함 국·공립 보육시설은 인가증 대신 위탁 계약서로 대체 가능 병설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실습당시 종일제 여부 및 보육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장 발행 공문을 첨부해야 함 실습당시의 인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해당 기관의 고유번호증, 납세번호증 인정 불가

실습 기간	4주 160시간 (야간대학 등의 경우 2회 분할 가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속 4주, 1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속하여(월요일부터 금 또는 토요일 까지) 4주, 160시간 이상, 1일 8시간 이상(모든 조건 동시 충족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회 분할실습은 야간대학, 원격대학, 한국방송통신 대학에 한함 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습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보육실습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실시하여야 함(전후 방학 포함) 공휴일이 2일 이상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 실습을 이수해야 함
실습 지도 교사	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보육교사 1급 국가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히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유치원 2급 정교사로부터의 실습지도 불인정 지도교사의 유치원 원장, 원감 자격증 사본 제출 불인정 보육실습확인서에 실습지도교사 국가 자격증번호 기재 요망 실습지도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함
보육 실습 확인서		보육실습확인서를 통해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(보육실습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07년도 이후 보육실습이수자는 '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' 및 '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' 각 1부를 첨부해야 함 보육실습확인서의 해당 내용은 빠짐없이 모두 기재해야 함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(http://chrd.childcare.go.kr) 관련서식 참고

보육실습, 반드시 확인하세요!

